

주요 경제 정책 및 이슈

(1997. 2. 19~3. 18)

2.21

재정경제원, 「저축 증대를 위한 조세 지원 강화 방안」 마련

-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부유층의 저축 증대를 유도
-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속·증여세가 전액 면제되고,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저축 상품 도입
- 그러나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 취지가 흐려질 우려

2.24

해양수산부, 「EEZ에서의 주관적 권리 행사 시행령」 입법 예고

- EEZ 내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선박 톤당 1,000 원의 기본 입어료와 어종별 어획량에 따라 추가 입어료 지불
- 북한과의 동·서해 접적 지역 및 부산 영도와 일본 대마도 사이의 일부 해역은 「특정금지구역」으로 설정돼 외국 어선의 어로 활동이 금지

2.26

정보통신부, 「신규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 요령」 확정 발표

- 제2 시내 전화와 제3 시외 전화 사업자의 일시 출연금이 각각 860억 원과 490억 원으로 대폭 경감
-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 허가때 사전공고제를 폐지

2.27

건설교통부, 「서울 및 수도권에 신규 택지 개발 예정 지구」 지정

-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
- 서울 수색, 경기 용인 등 8 개 지구에 300만 평으로 전원형 미니 신도시 개발

3.2

통산산업부, 「수입선 다변화 규제」 완화

- 수입선 다변화 품목 가운데 수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11 개 품목은 수입 승인서없이 관련 단체의 수입 추천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

3.6

재정경제원, 「금융실명제 보완 검토」 발표

- 금융실명제 시행 과정에서 야기된 과소비 조장, 저축률 저하, 중소기업 도산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검토 발표
- 지하 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금융종합과세 세율 인하, 자금 출처 조사 완화 등을 고려
- 그러나 이는 소급 입법의 형태가 되어 형평성의 문제 야기 가능성

3.7

재정경제원, 「조세감면규제법 대폭 개편」, 1999년 시행

- WTO 및 OECD가 요구하는 조세 규범에 맞도록 중장기 세제 발전 방안 마련
- 수출 및 수입 대체를 촉진하기 위한 준비금을 1998년까지 폐지하고, 조세감면법상 내·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정을 대폭 정비

3.10

국회, 「노동법 개정안」 통과

- 여당의 단독 처리로 문제가 되었던 노동법이 여야 합의로 재개정되어 국회를 통과
- 정리해고제의 2년 유예, 노조 전임자 임금은 매년 삭감하여 5년 후 지급 금지
- 개정 노동법은 여전히 재계 및 노동계 양측으로부터의 불만의 소지가 남아 있고, 애초 의도인 국가 경쟁력 강화의 명분보다는 각 당의 이해 관계에 의한 합의라는 문제점 상존

3.12

공정거래위원회, 「대기업 계열 분리 요건」 완화

-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사실상 독립 경영 중인 그룹 계열사의 분리를 촉진
- 계열 비상장사의 지분 상한선을 당초 10%에서 15% 미만으로 대폭 완화

3.14

재정경제원, 「은행의 중장기 차입에 대한 연간 한도 규제」 철폐

- 외환 부족 사태 해결과 환율 안정이 목적
- 동시에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외주식연계증권 발행 한도를 폐지
- 국내 은행이 외화를 차입하지 못한 것은 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보 사태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며, 오히려 외자 유입으로 인한 통화 팽창과 그에 따른 물가 상승 및 외채 증가의 부작용이 우려

3.17

재정경제원, 「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」 조기 확대

- 2000년 전면 개방 계획은 그대로 유지
- 올해부터 1999년까지 연간 한도 확대 폭을 5~10% 포인트 수준으로 확대하여 완전 개방시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 검토
- 4월부터는 중금사와 리스사에 대해서도 해외 차입 한도를 폐지할 방침